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25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소병훈 · 조계원 · 안태준

전종덕 · 이병진 · 박용갑

안호영 · 윤준병 · 박상혁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생 략)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자는 <u>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u> <u>· 수정을 한 경우</u>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 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전자의무기록에 기재 · 추</u> <u>가기재 · 수정을 하거나 전자의</u> <u>무기록을 열람한 경우</u> ----- ----- -----.